

##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5년 3월호

### 1. 법률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### 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가. 전자금융감독규정

나. 금융투자업규정

### 3. 한국거래소 규정

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

나.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

다. 분쟁조정규정

라. 시장감시규정

#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

나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

다. 신용거래약관

## 1. 법률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및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)

## 1. 법률\*

###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25/2/25 개정 · 2025/3/31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531호, 2024. 10. 22. 공포, 2025. 3. 31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출범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할 때 따라야 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함

#### 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〉

(2024. 10. 22. 공포, 2025. 3. 31. 시행)

- 공매도의 불법·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등의 발행계획이 공시된 이후 전환가액 등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등의 취득을 금지
-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
-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등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다자간매매체결회사(ATS)를 통한 차입공매도의 방법(제208조 제2항)
  - 투자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그 매도가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여야 함
  -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입공매도를 하도록 함
- 전환사채 등의 취득이 금지되는 차입공매도 기간(제208조의4 제3항 신설)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- 공매도 시 전환사채·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전환사채·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·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
-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매수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 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

□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 계약의 상장주권 상환기간(제208조의6 신설)

-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주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상장주권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
  -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음
-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상장주권이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사유로 증권시장에서 해당 상장주권을 매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을 해당 상장주권 상환기간의 종료일이 됨

□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 및 조치의 내용(제208조의7 신설)

-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은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
- (대상 법인)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(순보유잔고)가 0.01%(1억원 미만 제외)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
- 조치 내용
  -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·운영
  - 임·직원 역할과 책임, 잔고관리, 공매도 내역 기록·보관(보관기간 5년 이상)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
  - 중앙점검시스템(NSDS)을 통한 공매도 사후점검을 위하여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,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
  -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,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에 새롭게 해당하게 될 경우 이를 알려야 함
- 차입한 상장주식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공매도 주문을 뱀으로써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없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·이용 의무 면제
  -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자료제출 의무는 적용
-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사전·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,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## 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전자금융감독규정 (금융보안 규제를 규칙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합리화)
- 나. 금융투자업규정 (국채 통합매매계좌 도입)

## 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\*

### 가. 전자금융감독규정 (2025/2/5 개정 · 시행)<sup>1)</sup>

#### 1) 개정 이유

- 금융회사 등이 급변하는 IT 환경과 보안위험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(Rule) 중심에서 원칙(Principle)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 역량 및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 · 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등의 가입 기준 현실화(제5조 제1항)
  -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한도는 전자금융거래 규모,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설정
    - 금융투자업자, 증권금융회사, 종합금융회사 등은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경우 10억원, 자산이 2조원 미만인 경우 5억원
    - 전자금융업자는 2억원~10억원
    - 복수로 해당하는 경우 금액의 합계를 보상한도로 함(단, 전자금융업자의 여우에는 합계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5억원으로 함)
-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위원회 심의 · 의결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(제8조의2 제4항)
  -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위원회 심의 · 의결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심의 ·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함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하고, 제5조 제1항 · 제2항 및 제23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- 건물, 설비, 전산실 관련 규정을 원칙중심으로 규정(제9조, 제10조, 제11조)
  -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안전대책 및 출입통제 보안대책을 수립·운영하여야 함
  -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전원, 공조 등 설비의 안전성을 위한 기준을 수립·운영하여야 함
  -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하고, 무선통신망은 설치 금지, 그 밖에 재해 및 위해방지, 출입·접근통제 등 전산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수립·운영하여야 함
  
- 악성코드·공개용 서버 관리방안 등을 원칙중심의 합리화(제16조 제17조)
  -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사이의 독립된 통신망(DMZ구간)에 설치하고 네트워크 및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할 것
  - 공개용 웹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은 업무관련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중 인증수단을 적용할 것
  - 공개용 웹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및 시험·개발 도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,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할 것
  -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에 자료 게시 절차·내용에 관한 내부통제 방안과 개인정보 유출 및 위·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 방안을 수립·운영하여야 함
  
-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영·운영 관련 사항인 IT시스템 사업 추진, 계약·감리 관련 원칙중심의 규정(제20조, 제21조, 제22조)
  -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수립·운영
  -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시에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·신뢰성 및 계약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결·이행·감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·운영
  -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을 수립·운영
  
-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범위 확대(제23조 제8항)
  - 시스템 오류,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·인력을 구비한 재해복구센터를 주전산센터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구축·운영하여야 함

## 나. 금융투자업규정 (2025/2/19 개정·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국제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제거래를 일괄하여 결제하는 외국인투자자의 매매거래 주문을 개별 외국인투자자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, 외국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명의의 국제통합매매계좌를 개설하여 일괄 주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

## 2) 주요 내용

### □ 국채 통합매매계좌 도입(제607조 제9항, 제6-14조의2)

- 매매주문은 '국채 통합매매계좌'로, 결재는 '국채 통합계좌'를 이용함으로써 국채 거래 프로세스 전반을 개별 펀드 또는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처리 가능

### □ 국채 통합매매계좌 관련 자료(제6-7조 제10항)

- 계좌 내의 개별 외국인 현황, 거래내역 등 운영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·유지·제출하도록 규정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### 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(새로운 호가(주문) 유형 도입 및 개념 정비)
- 나.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(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에 대한 통합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정)
- 다. 분쟁조정규정 (분쟁조정 대상 및 회원 개념 확대)
- 라. 시장감시규정 (시장감시 대상 및 회원 개념 확대)

## 3. 한국거래소 규정\*

###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(2025/2/5 개정 · 2025/3/4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출범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호가(주문) 유형을 도입하고,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중간가호가(주문) 및 스톱지정가호가(주문) 신설(제2조 제4항 제7호 및 제8호, 제2조 제5항 제8호 및 제9호)
  - 중간가호가(주문)는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, 가격은 정규시장의 최우선매수호가와 최우선매도호가의 중간가격으로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호가(주문)
  - 스톱지정가호가(주문)는 종목, 수량 및 가격은 지정하되, 시장가격이 투자자가 사전에 설정한 스톱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호가로 효력이 발생되어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호가(주문)
- 중간가호가 도입에 따라 기세, 최우선평가, 최우선매수호가, 최우선매도호가 개념 정비
  - 중간가호가로 제출된 매도호가, 매수호가를 제외하여 기세 산출(제2조 제9항)
    - ‘기세’라 함은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가격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, 높은 매수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함
  - 중간가호가로 제출된 매도호가, 매수호가를 제외하여 최우선평가, 최우선매수호가, 최우선매도호가를 각각 산출(제20조의4 제1항 및 제20조의5 제1항)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중간가호가 도입에 따라 직전가격 개념 정비(제23조 및 제24조)
  - 매매거래체결시 간주가격으로 이용되는 직전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호가가격단위에 일치하도록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절상 또는 절하하는 방식으로 정비
- 스톱지정호가 지정가호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호가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시행세칙 위임 근거 마련(제12조 제2항)
-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대상종목을 시간외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시행세칙 위임근거 마련(제34조의2 제1항)

## 나.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(2025/2/5 제정 · 2025/3/4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증권시장(유가증권·코스닥·코넥스)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에 대한 통합 ‘청산결제 업무규정’ 제정안 마련을 통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출범에 대비하고 거래소 CCP의 전문성·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기존 각 시장업무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청산결제 관련 규정을 통합 이관하면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청산결제 반영, 결제방법·특례 등 업무별 편제 구성 및 리스크관리 핵심사항(거래증거금, 결제불이행처리 등) 포괄
  -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사항을 총칙(목적, 정의)과 증권시장 청산결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등 향후 출범에 대비하여 규정에 반영(제1조, 제2조, 제5조, 제7조, 제27조, 제32조, 제35조, 제39조)
  - 청산결제 업무 중 결제불이행 관련 리스크관리의 핵심사항인 거래증거금 및 대응증권 관련 조문을 청산결제 업무규정에 편입(제27조, 제28조, 제29조, 제30조, 제31조, 제32조, 제33조, 제34조)
  -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관한 시장업무규정 내용 중 일일정산, 수익의 반환, 교환·대체 등 청산결제 관련 조문을 선별하여 이관(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24조, 제25조)
- 청산결제 공통사항을 통합(40개 내외 조항) 구성하고, 총칙, 증권시장 청산 및 결제, 거래증거금, 결제위험관리 등 주요 업무별로 구분
  - (총칙) 목적, 정의, 청산업무 중단·재개 등(제1조~제4조)
  - (증권시장의 청산 및 결제) 적용범위, 채무인수, 차감, 결제특례 등(제5조~제26조)
  - (거래증거금) 예탁 및 인출, 관리 및 운용, 장중추가증거금, 대응증권 등(제27조~제34조)
  - (결제위험관리) 결제위험 파악, 유동성공급, 결제불이행 조치 등(제35조~제40조)

## 다. 분쟁조정규정 (2025/2/5 개정 · 2025/3/4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시장감시위원회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분쟁조정 대상 및 회원 개념 확대(제2조, 제4조)
  - 분쟁조정 대상을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로 하고, 회원의 개념을 거래소 회원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로 정의

## 라. 시장감시규정 (2025/2/5 개정 · 2025/3/4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시장감시위원회가 자본시장법(재78조 제3항 · 제4항, 제402조 제1항, 제404조 제2항 · 제3항)상 지정거래소로서 수행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감시,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 등에 대한 규정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시장감시 대상 및 회원 개념 확대(제2조 등)
  - 시장감시 대상을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로 하고, 회원의 개념을 거래소 회원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로 정의
  -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예방, 감시, 심리, 감리 등까지 포함하도록 확대
    - 연계거래 범위에 시장(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)에서 또는 시장과 다른 거래소시장 사이의 거래를 포함
- 호가 정보 등의 요구 근거 신설(제10조의2)
  - 자본시장법(제78조 제3항)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호가의 상황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호가, 매매체결 등에 관한 정보 요구 규정 마련

- 심리 또는 감리 결과 거래참가자의 업무기준 위반 사실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통보하는 근거 등 마련(제20조 제3항, 제29조 제4호)
  - 위원회는 심리 또는 감리의 결과 이 규정 외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해당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통보
  
- 거래참가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관련 사실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 회사에 통보하는 근거 등 마련(제21조, 제22조 제2항, 제24조, 제26조의3)
  - 위원회는 심리 또는 감리의 결과 회원 또는 그 임원·직원이 규정위반, 조치위반, 보고서·자료등 허위 기재 및 누락, 심리 또는 감리 방해·불응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등을 할 수 있음
  - 다만, 거래참가자가 심리 또는 감리를 방해·불응하거나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제출등을 거부하는 등 심리 또는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징계의 요구를 할 수 있음
  
- 회원제재금 미납에 따른 지체 가산율 조정(제22조 제3항)
  -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과징금의 지체 가산율(연6%) 수준으로 인하여 회원에 대한 제재 수준 합리화
  
- 시장업무규정 인용 규정에 동일한 내용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추가(제6조 제5항, 제19조의2)
  -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등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의 결과 업무기준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(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을 거부한 경우로 한정)에는 이를 다른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함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 합리화 및 내부통제 절차 정비)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(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시장의 주문전송 차단기준 적용)
- 다. 신용거래약관 (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시장에서의 신용거래 추가)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\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25/2/13 개정 · 2025/2/14 시행)<sup>1)</sup>

1) 개정 이유

-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내부통제 절차를 정비하기 위함
  - 재산상 이익 제외 대상 확대, 이사회 의결 대상 · 보고 내용 정비, 부당한 재산상 이익 항목 신설 등

2) 주요 내용

- 물품 · 식사 등의 재산상 이익 제외 금액 상향(제2-63조 제2항 제3호)
  - (기존) 소액 마케팅 · 접대 활동의 편의를 위해 3만원 이하의 물품 · 식사 등의 경우 재산상 이익 규제를 면제
    - 2009년 이후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여 제도의 실익이 낮아지고 있음
  - (개정) 물가 상승률 등 사회 ·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,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물품 · 식사 등의 금액을 5만원 이하로 상향
- 재산상 이익 제외 신유형 상품권 범위 현실화(제2-63조 제2항 제3호)
  - (기존) 3만원 이하의 소액 ‘물품’ 제공의 편의 차원에서 ‘물품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’에 대해 재산상 이익 규제를 면제
    - 신유형 상품권은 ‘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’ 및 ‘금액형 신유형 상품권’으로 구분(신유형 상품권 표 준약관 제2조 제2항)
    - 동 상품권은 ‘물품’ 중에서도 ‘특정 상품’만으로 한정되어 지나치게 협소
  - (개정) 소액의 ‘물품’ 제공 취지에 맞게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범위를 확대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 
 1) 제2-67조 제2항 · 제3항 · 제5항, 제2-68조 제1항 제10호, 같은 조 제4항 및 제2-68조의2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

- 특정 '상품' 제공 → 특정 '유형'의 상품 제공
  - 특정 유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금액형 상품권도 재산상 이익 규제를 면제
- 보수·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 해당 여부 명확화(제2-63조 제2항 제6호)
- (기존)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보수·수수료 등의 경우 회사의 보수·수수료 정책에 따라 차등화가 가능한 것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
    - 그 할인이나 면제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으나,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
    -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등에 해당 여부 기재(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, 공통/증권·선물)
  - (개정)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수취하는 보수·수수료 등의 할인·면제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
    - 금융투자회사가 타 기관에 납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 등의 할인·면제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함을 명시
- 비대면 실명확인용 소액 이체 재산상 이익 제외(제2-63조 제2항 제7호)
- (기존) 재산상 이익 규제 취지와 무관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소액(1원) 이체 금전 지급이라는 이유로 재산상 이익으로 규제
  - (개정)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소액 이체를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
    -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라는 규제 취지 고려시, 동 사안은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할 실익 부족
- 이사회결의 대상·보고 내용 등 구체화(제2-67조 제2항, 제3항, 제5항)
- (기존)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
    - 회사가 회당 금액만 정하고 누적 금액을 정하지 않을 경우,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다회에 걸쳐 거액 제공이 가능
    - 이사회 의결 외 준법감시인 승인 절차 등 별도 통제절차가 미비하거나, 이사회 보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내부 통제 실효성이 떨어짐
  - (개정) 이사회 등을 통한 재산상 이익 내부통제 강화
    - '이사회가 정한 금액'을 '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회당·누적 금액 등 이사회가 정한 금액'으로 구체화
    - 회사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시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 심사 절차를 신설
    - 이사회 보고 내용 구체화(제공절차 준수 여부, 부당한 재산상 이익 여부, 공시 및 기록·보관의 적정성 등)
- 과도한 매매를 유발하는 경우 등 부당한 재산상 이익 유형 추가(제2-68조 제1항 제10호)
- (기존) 거래금액 등에 비례하여 동일인에 대한 한도 없이 현금 등을 지급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 이벤트의 경우 과도한 매매 유발, 이해상충 우려 존재
  - (개정) 동일 이벤트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한도 없이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을 부당한 재산상 이익 유형으로 추가하여 과도한 매매유발 등 방지

- 부당한 재산상 이익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 신설(제2-68조 제4항)
  - (기존) 규정에서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을 금지하고 있으나,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 공받은 후 반환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 미비
  - (개정) 부패 우려, 제공자 확인 불가 등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,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시 부당한 재산 상 이익의 수령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 신설

## 나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(2025/2/21 개정 · 2025/3/4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출범에 따라 주식매매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개설하는 시장에도 적용하 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개설한 시장에도 주문전송 차단기준 적용(제2-23조의5)
  - 일정 수량 초과 주식매매 주문은 한국거래소 · 넥스트레이드로 전송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· 운영

#### [주문전송 차단기준]

| 구분(시가총액)             | 차단 대상(수량 기준)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0조원 이상              | 1,000억원을 기준가격으로 나눈 수량   |
| 1,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   |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|
| 200억원 이상, 1,000억원 미만 | 10억원을 기준가격으로 나눈 수량      |
| 200억원 미만             |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 |

## 다. 신용거래약관 (2025/2/7 개정 · 2025/3/4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받아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

## 2) 주요 내용

- 약관 적용범위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신용거래 추가(제1조 제1항)
  -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와 금융투자회사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,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적용
  
- 회사와 고객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관련 규정 추가(제19조 제1항)
  - 고객과 회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, 거래소 규정, 넥스트레이드 규정등을 준수

## 3) 관련 규정

- 증권 대차거래 약관 (2025/2/7 개정 · 2025/3/4 시행)
  - 제1조 제1항, 제20조
  
-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(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)(2025/2/7 제정 · 2025/3/4 시행)
  - 제1항 제3호 및 제7조, 제25조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